

# 저수지 주변 수변개발 시범사업

전 택 기  
(jtk@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 머릿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으며, 그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시설은 2009년 말 17,569개로 설치연도가 64년 이상경과 (1945년 이전 준공)된 시설이 9,154개로 전체의 52.1%에 달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 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DDA·FTA 등 시장개방과 고유가 등에 대비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동안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국고지원은 2009년 42%인 1,527억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항구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수변개발의 시범사업 위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2010년 6월 10일 시행되었다.

## ▶ 법 제정 사유

-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유지 범위 내에서 개발,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
-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 주요내용

- 정의
  -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吹入縷), 용수로, 배수로, 응덩이(維持),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 주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주변지역 범위」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 따른 체육시설업**
- 다른 법률과의 관계(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 법률의 주요내용

표 1. 특별법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 사업 등을 정의</li> </ul>  |
| 제2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 계획 등<br>(제4조~제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반시설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li> <li>•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광진흥법」등 각 개별법의 사업 주체로 지정의제</li> </ul>  |
| 제3장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등<br>(제7조~제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주변지역 활용구역을 지정·고시 및 주민열람토록 규정</li> <li>•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li> </ul>   |
| 제4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의 시행 등<br>(제10조~제2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의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li> <li>•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부담금의 감면 사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사항을 규정</li> <li>• 주변지역활용구역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및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li> </ul> |
| 제5장 유지관리재원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li> <li>•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 개선 비용으로 사용</li> </ul>   |
| 제6장 보조(제25조~제2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등을 규정</li> <li>•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등의 설치는 국가·지자체가 보조·융자 가능 토록 조치</li> </ul>   |
| 제7장 벌칙(제30조~제3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대리인·종업원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법인 및 개인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li> </ul>   |

# | 프로젝트 리포트 |

## ■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저수지 수변개발 추진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변

개발을 우선 3개 시범지구를 개발 후, 탄력적으로 확대 개발함으로써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확보 및 농어촌지역발전과 자립형 공사 도약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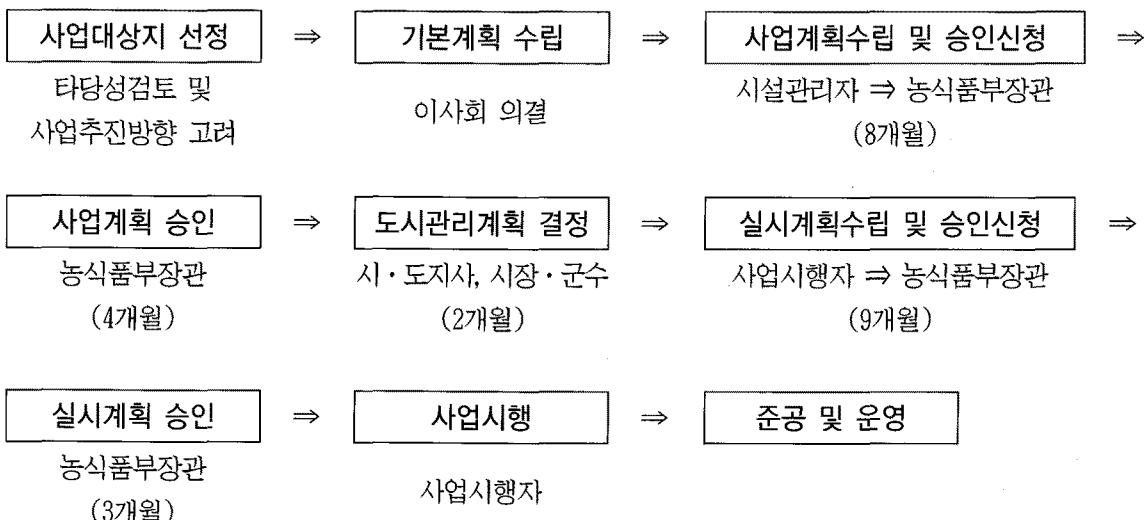
- 1단계: 30지구

| 구 분 | 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
| 지구수 | 30 | 3    | 7    | 10   | 10   |

- 2단계('14년 이후): 본격적 개발 확대
- 대상지 선정('10~'11년 추진 10지구)

| 도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지구명 | 10 | 고삼 | 장현 | 금석 | 예당 | 팔덕, 흥덕 | 영천 | 성주 | 금호 | 광령 |

- 사업추진절차



- 1단계 총사업비: 1조 8천억원으로 지구당 평균 사업비를 600억으로 가정하고 지구당 운영수익

연 55억 운영기간 20년으로 총수익은 3조 3천 억원을 목표로 함

표 2. 1단계 사업대상지(안) 주요내용

| 구 분 |          | 대상지구              | 주요내용   |
|-----|----------|-------------------|--|
| 계   | 10지사     | 10지구              |  |
| 경기  | 안성       | 고삼저수지<br>유원·관광지   | 도심인근에 위치, 서울로부터 1시간30분거리이고 공사보유 토지가 많아 종합 관광 레포츠시설 도입검토                                |
| 강원  | 장현       | 장현저수지<br>테마파크     | 강릉IC에서 4.5km 거리에 위치, 강릉시민의 휴식처로 이용, 수상스포츠시설을 포함한 테마를 주제로 개발검토 필요                       |
| 충북  | 음성       | 금석저수지<br>유원·관광지   | 현재 생태공원부지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 및 연차별 점진적인 개발 바람직  |
| 충남  | 예산       | 예당저수지<br>테마낚시관광지  | 지자체 협의, 저수지 종합개발마스터플랜 수립 필요<br>연차별 개발 바람직  |
| 전북  | 순창       | 팔덕저수지<br>농촌관광휴양단지 | 강천산 군립공원 인접(1km), 주변 숙박시설 부족, 온천운영권 확보전망, 지자체협조 적극적(미분양분 순창군 매입 구두 약속) 등 관광휴양단지 필요성 대두 |
| 전북  | 정읍       | 홍덕저수지<br>레져스포츠단지  | 공사소유지 81ha 보유, 부지 평지로 조망 부족, 골프장 등 레져스포츠 단지 검토 필요                                      |
| 전남  | 보성       | 영천저수지<br>테마파크     | 녹차밭 단지, 소리공원(판소리), 유풋해수욕장 등 주변여건양호, 농촌관광 및 레저시설 도입 검토 필요                               |
| 경북  | 성주       | 성주저수지<br>모험레포츠단지  | 자연경관 양호, 지자체 협조 적극적, 가야문화권특정지역개발 사업과 연계 레져사업추진 필요                                      |
| 경남  | 진주<br>산청 | 금호저수지<br>유원·관광지   | 진주시 수변생활공원 조성계획 수립 중(시장 공약사항), 인근(2km)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공사 개발계획(안) 지자체 협조 여건 양호          |
| 제주  | 제주       | 광령저수지<br>연수·휴양단지  | 제주공항에서 15분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가족호텔등의 휴양 시설로의 개발이 타당함  |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10년)

### ▶ 예당호수 수변 개발

-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광시면 일원
- 개발면적: 50.4ha
- 사업비 및 공사기간: 863억원, '11~'14(4개년)
- 사업추진방식: 기반조성 후 시설부지 임대 및 분양

- 근거법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개발계획 구상(안): 지역특산물인 사과와 수변을 테마로 한 시설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활용구역 지정: '10. 5 ~ '11년 상반기

# | 프로젝트 리포트 |

표 3. 예당호수 수변개발 주요시설

| 구 분                     | 시설내용   | 규모                                    |  |
|-------------------------|--|---------------------------------------|--|
| 교육/체험                   | 연꽃전통문화센터<br>생태공원(종암, 매화마름)   | A=14ha<br>기설치                         |  |
| Eco<br>-Lake<br>Village | 1. 워터프론트 존<br>- 레이크 빌리지, 푸드티운<br>파크골프장 등<br>2. 상업센터 존<br>- 테마카페, 역사문화관 등<br>3. 콘도미니엄 존<br>- 힐링센터, 콘도미니엄<br>4. 팜랜드 존<br>- 사과농장, 직거래장터 | A=28.6ha                              |  |
| 숙박                      | 오토캠핑장, 열기구체험장  | A=4.8ha                               |  |
| 운동                      | 수상골프장<br>승마장<br>트레킹코스  | 150타석<br>A=10.6ha<br>A=6.5ha<br>약 7km |  |

-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11년 하반기
- 공사시행 및 시설부지 분양 (민간투자자 모집): '12년

- '11년 상반기
-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11년 하반기
- 공사시행 및 시설부지 분양 (민간투자자 모집): '12년

## ▶ 고삼호수 수변개발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보개면 일원
- 개발면적: 56.1ha
- 사업비 및 공사기간: 1,094억원, '11~'14 (4개년)
- 사업추진방식: 기반조성 후 시설부지 임대 및 분양
- 근거법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개발계획 구상(안)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활용구역 지정: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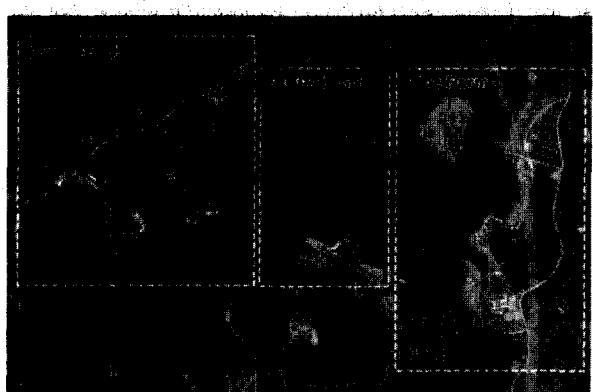


그림 1. 고삼호수 계발계획 구상(안)

표 4. 고삼호수 수변개발 주요시설

| 구 분                 | 규 모    | 주요시설 및 기능   |
|---------------------|--------|---|
| 바인가든 (Vine Garden)  | 12.5ha | 와인레스토랑, 테마카페, 펜션, 에스테틱센터, 낚시테마공원<br>포도정원(小농장), 와이너리, 수상레포츠 센터, 전망타워 등 |
| 바인팜 (Vine Farm)     | 38.8ha | 농촌펜션, 포도농장&생산공장, 와인뮤지엄, 연수원 및 부대시설 등                                  |
| 오토캠핑장 (Buffer Zone) | 4.7ha  |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

\* 에스테틱(aesthetic): 여성의 피부와 몸매를 아름답게 관리해주는 피부관리샵

### ▶ 팔덕지 수변개발

- 위치: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원
- 개발면적: 20.6ha
- 사업비 및 공사기간: 446억원, '12~'15 (5개년)
- 사업추진방식: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건물 신축후 회원권 분양 및 운영
- 근거법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개발계획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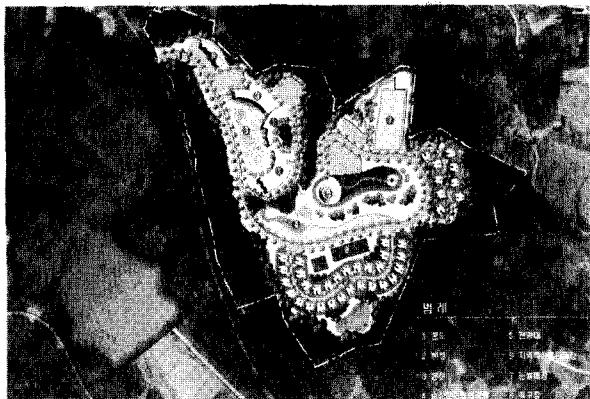


그림 1. 고삼호수 계발계획 구상(안)

표 5. 팔덕지 수변개발 주요시설

| 구 分    | 부지면적(m <sup>2</sup> ) | 건축면적(m <sup>2</sup> ) | 비 고    |
|--------|-----------------------|-----------------------|--------|
| 숙박단지   | 콘 도                   | 11,646                | 11,446 |
|        | 펜 션                   | 23,325                | 6,779  |
|        | 소 계                   | 34,971                | 18,225 |
| 휴양문화시설 | 온 천                   | 9,810                 | 7,540  |
|        | 순창문화체험공원/전망대          | 16,205                | 1,866  |
|        | 소 계                   | 26,015                | 9,406  |
| 상업시설   | 직거래장터                 | 1,822                 | 563    |
| 체육시설   | 눈/잔디 썰매장              | 5,468                 |        |
|        | 족구장                   | 5,560                 |        |
|        | 소 계                   | 11,028                |        |
| 기반시설   | 진입도로/연못               | 17,703                |        |
|        | 주차장                   | 8,171                 | 270대   |
|        | 소 계                   | 25,874                |        |
| 녹지시설   | 녹 지                   | 106,008               |        |
| 계      |                       | 205,718               |        |

##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활용구역 지정: '11년 하반기
-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12년 상반기
- 공사 착공: '12년 하반기

## ■ 맺음말

고삼저수지는 포도를 테마로 한 바인빌리지 조성, 예당저수지는 사과와 생태환경을 특화하는 등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관리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수리시설 개보수 등 물공급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어 대농민 서비스 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개발되는 저수지는 지역특화사업, 농어촌경관의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 참고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p.24.
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
3.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실, 2010, 자체사업 현황보고서, pp.37~38.
4. 한국농어촌공사 공사발전기획단, 2010, 자립경영실현을 위한 자체사업분야 추진전략, p.1.
5.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2010,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안).
6.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2010,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안).
7.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2010, 특별법 시행에 따른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계획(안).